투자 위험 등급 2 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NH-Amundi 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NH-Amundi HANARO 삼성전기고정 AI 핵심기판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NH-Amundi HANARO 삼성전기고정 AI 핵심기판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NH-Amundi HANARO 삼성전기고정 AI 핵심기판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NH-Amundi 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2026 년 9 월 15 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6 년 10 월 29 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이 집합투자기구는 모집(매출) 총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2026 년 10 월 29 일부터 모집을 개시하며 모집개시일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각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본 집합투자기구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판단을 내리기 전에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이 투자신탁과 같은 상장지수투자신탁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가 되는 투자신탁이나, 이 투자신탁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전부 해지하여야 하므로 이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이 투자신탁은 기초지수인 FnGuide 삼성전기고정 AI 핵심기판 지수 (Price Return)와 관련된 종목의 한정된 투자대상에 집중하여 투자함으로써 보다 더 분산투자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높은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시장상황 또는 환경변화에 의해 크게 하락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분산투자된 투자신탁에 비해 투자원금액의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2026.09.15)

NH-Amundi HANARO 삼성전기고정AI핵심기판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F0652)

투자위험등급 :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NH-Amundi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입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에 따른 주식가격 변동위험,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품으로 상장폐지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NH-Amundi HANARO 삼성전기고정AI핵심기판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FnGuide 삼성전기고정AI핵심기판 지수 (Price Return)를 기초지수로 하여 1 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FnGuide 삼성전기고정AI핵심기판 지수 (Price Return)는 AI반도체 및 인프라의 고도화에 따른 차세대 패키징 기술 및 기판 산업의 성장에 주목하여, 이와 관련된 소재·부품·장비를 포함한 핵심 밸류체인 기업에 투자하는 테마형 지수입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투자비용

명칭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단위 : %)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단위 : 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지정참가회사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비용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투자신탁	없음	0.45	0.01	-	0.45	46	94	145	253	568

(주 1)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 2)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35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3) '동종유형 총보수'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추이 (연평균 수익률) (단위,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3 년	최근 5 년	설정일 이후
투자신탁	2026.					
기초지수						

	수익률 변동성 \| \| \| \| \| \| \| (주1) 기초지수: [FnGuide 삼성전기고정AI핵심기판 지수 (Price Return)] x 100% (기초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 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인력 (`26.09.15 기준)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개,억원) \|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주식형, %) \| \| \| \| 운용 경력년수 \| \| \| \| 집합투자 기구 수 \| 운용규모 \| 운용역 \| \| 운용사 \| \| \| \| \| \| \| \| \| 최근 1 년 \| 최근 2 년 \| 최근 1 년 \| 최근 2 년 \| \| 최지원 \| 1996 \| 책임 (대리) \| 8 \| 1,761 \| - \| - \| 175.12 \| 101.00 \| 11 개월 (주 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 2)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ETF운용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부책임 운용전문인력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상기운용전문인력 관리 감독하에 담당본부내(혹은 팀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 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 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다만, 일부 자료는 기간 미경과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 5)'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상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위험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지정참가회사 및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주식 등 가격변동위험** \| 이 투자신탁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및 거래상대방 위험** \|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주식 등 증권의 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하락, 채무불이행, 부도발생 등에 따른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위험** \|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서 법령

		등에서 정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은 해지되고 잔여자산을 분배할 것이나, 잔여자산 분배 시까지의 기간 동안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수익증권의 현금화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추적오차발생 위험	이 투자신탁은 기초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실현함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투자신탁보수, 매매수수료 등 관련 비용의 지출 등 현실적 제한으로 인하여 기초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과 기초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할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자는 당해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수추종위험	이 투자신탁은 기초지수 수익률 추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기초지수 수익률 하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즉, 기초지수 수익률 하락시 수익률하락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포트폴리오 조정 등 별도의 노력을 수행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트폴리오 집중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기초지수인 FnGuide 삼성전기고정 AI 핵심기판 지수 (Price Return)와 관련된 종목의 한정된 투자대상에 집중하여 투자함으로써 보다 더 분산투자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높은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시장상황 또는 환경변화에 의해 크게 하락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분산투자된 투자신탁에 비해 투자원금액의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수익자의 투자자금 회수 곤란 위험	개인수익자는 보유 수익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만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즉, 개인투자자는 보유 수익증권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환매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거래가 부족하여 개인수익자가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수량을 매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개인수익자가 보유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현금화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대하지 아니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법인수익자의 경우 보유 수익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거나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설정단위 또는 그 정배수로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환매신청할 경우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서 환매가 가능합니다.
	투자신탁 소규모 위험	투자신탁의 설정금액이 소액이거나, 환매 등에 의해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분산투자 등 원활한 펀드 운용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위험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 개인투자자: 장내 매수 • 법인투자자: 장내 매수, 설정 청구	**환매 방법**	• 개인투자자: 장내 매도 • 법인투자자: 장내 매도, 환매 청구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	· 산정방법: 당일 공고 기준가격 = 직전일 순자산총액/ 직전일 수익증권 총좌수 1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 공시장소: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의 영업점과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한국거래소(www.krx.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 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의 보유기간과세 적용 시행**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2010년 7월 1일(이하, '시행일')부터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과세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주식형 ETF(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ETF)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ETF의 과세표준 및 매매내역관리, 원천징수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거래 증권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AP)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NH-Amundi 자산운용㈜ (대표번호: 02-368-3600/ 인터넷 홈페이지: www.nh-amundi.com)		
운용관련 자문업자	해당사항 없음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가능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총액에 제한 없음
효력발생일	2026 년 10 월 29 일	**존속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주요업무),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4 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42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 nh-amundi.com)
- 수시공시: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 nh-amundi.com)

[목 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9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9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9
3. 모집예정금액 9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9
5. 인수에 관한 사항 9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9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2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12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12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12
4. 집합투자업자 12
5. 운용전문인력 12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13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13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4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7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21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26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33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34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36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41
1. 재무정보 41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41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41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42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42
2. 운용관련업무 수탁업자에 관한 사항 44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44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45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46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46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47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47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50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51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4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55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 사항 55
용 어 풀 이 56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NH-Amundi HANARO 삼성전기고정 AI 핵심기판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F0652)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또는 "ETF"라고 합니다)(특정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투자신탁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가 가능한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해당사항 없음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좌수 및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주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참가회사,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기간	2026년 10월 29일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됩니다.
모집장소	지정참가회사, 판매회사의 본·지점(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 및 한국거래소(www.krx.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집방법 및 절차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설정단위인 50,000좌 단위로 설정 청구 가능)

주1)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가. 거래소 상장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에게 환금성 및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 설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합니다.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 이후 거래는 증권시장의 관련 규정 및 시행세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1) 상장 증권시장 : 한국거래소

(2) 상장일 : 투자신탁 설정일로부터 30일 이내
(3) 거래방법 : 한국거래소가 개장되어 있는 시간 내 거래가 가능합니다.

나. 상장요건
(1) 규모요건 : 신탁원본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발행 수익증권의 수가 10만좌 이상일 것
(2) 유동성 요건 : 지정참가회사가 1사 이상이며, 지정참가회사 중 유동성공급자가 1사 이상일 것
(3) 자산의 구성요건 : 상장지수펀드의 자산구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① 증권의 지수 변화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을 자산으로 편입할 것. 다만, 목표로 하는 지수가 단순평균인 경우에는 모든 종목을 자산으로 편입할 것
-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100분의 95 이상
- 종목 수를 기준으로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100분의 50 이상

② 증권종목 이외의 기초자산에 대한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해당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는 종목을 100분의 95 이상 편입할 것

③ 상장지수펀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의 ① 또는 ②의 방법으로 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납입자산 내역을 구성하거나 금전납입을 할 것
-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
-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내파생상품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
-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이하 "합성상장지수펀드"라 한다)
- 상장지수펀드의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이하 "액티브상장지수펀드"라 한다)
-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의 특성, 자산운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다. 상장폐지 요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상장지수집합기구의 상장을 폐지합니다.

① 상장지수펀드증권(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증권은 제외합니다)의 1좌당 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상장지수펀드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가 0.9 미만(다만, 액티브상장지수펀드의 경우에는 0.7 미만)이 되어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② 상장지수펀드가 목표로 하는 지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지수를 산출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다만, 지수 산출의 단절 등 일시적인 중단은 제외한다.
- 지수의 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관련 법령의 변경 등으로 산출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산출기준 변경 후에도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과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동일하고 지수의 고유목표에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③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회원이 없는 경우

④ 해당 종목의 모든 유동성공급회원이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회원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 말에도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⑥ 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법인이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⑦ 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04조제1항 각 호(같은 항제4호의 신고의무 위반 사유를 제외합니다)에 따른 투자회사주권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⑧ 상장지수펀드의 수익증권 상장법인이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⑨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지수펀드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라.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 제19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마.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일부터 1월 전에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 관련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신탁계약서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합니다.

※ 상기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은 이 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작성 기준일 현재까지 파악되는 것이며, 향후 증권시장의 필요에 따라 동 기준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요건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익증권의 상장 이후 거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상장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을 적용하게 되며,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환금성이 크게 제약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에 따른 상장수수료, 연부과금 및 지수사용료 등 제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NH-Amundi HANARO 삼성전기고정 AI 핵심기판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F0652)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26.	최초 설정(예정)

주1) 상기 연혁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주요 변동 사항에 대해 일자와 내용을 간략히 기재한 것입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관련 법령 또는 신탁계약서상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NH-Amundi 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2 (Tel: 02-368-3600, www.nh-amundi.com)

주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2026.09.15 기준)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개)	운용규모 (억원)
최지원	1996	대리	11개월	-	-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 2025.02. ~ 현재NH-Amundi자산운용 ETF투자본부 ETF운용팀 - 2023.08. ~ 2025.02 NH-Amundi자산운용 ETF투자본부 ETF리서치팀 - 2022.11. ~ 2023.08 현대차증권 기업분석팀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ETF운용팀에서 담당합니다. 상기인은 "책임운용전문인력"으로 이 투자신탁의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합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상기 운용전문인력의 관리 감독하(혹은 해당 운용인력의 부재시)에 담당 본부내(혹은 팀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나.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026.09.15 기준)

성명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주식형)			
	집합투자 기구 수(개)	운용규모 (억원좌)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최지원	8	1,761	-	-	175.12	101.00

주1)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2)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기구 분류상 2차, 3차 분류기준)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팀운용이지만,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상기 책임운용인력이 운용한 펀드의 평균운용성과를 기재하였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운용역) 일부 자료는 기간 미경과로 수익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운용부서	책임운용역	운용부서	책임운용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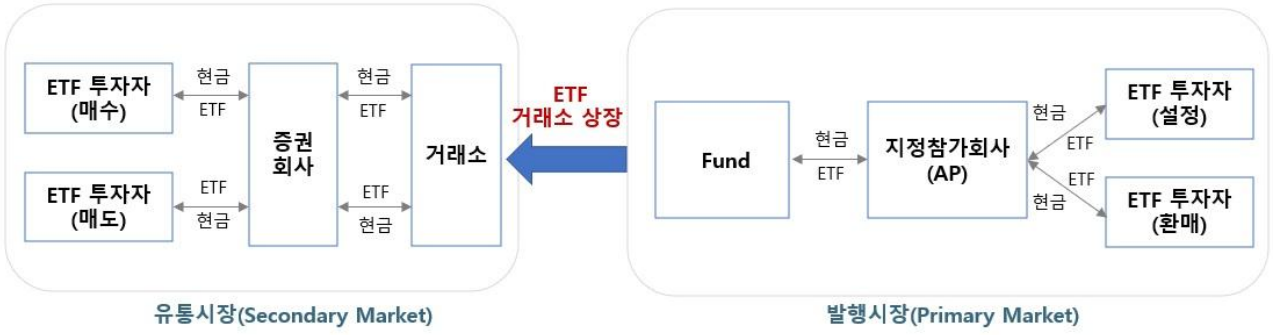
주1)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주2)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관련법령 또는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FnGuide 삼성전기고정 AI 핵심기판 지수 (Price Return)**를 기초지수로 하여 1 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에 해당하는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합니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자산총액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①	주식	60% 이상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1 호의 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하며, 증권예탁증권의 경우 지분증권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
②	집합투자증권	40% 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③	파생상품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으로서 주식이나 주식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④	환매조건부매도	증권 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⑤	증권의 대여[주 3)]	증권 총액의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⑥	증권의 차입[주 4)]	20% 이하	증권의 차입
⑦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⑧	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환매조건부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투자대상 ① 및 ②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상기 투자대상 ① 및 ②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상기 투자대상 ③ 내지 ⑥, 신탁계약서 제17조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책임이 강화된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의 경우 초과일부터 6개월까지,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신탁계약서 제17조제7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신탁계약서 제17조제2호 본문, 제3호 가목,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신탁계약서 제17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은 지수산출기관의 지수 편입종목 교체일 및 교체일 직전 영업일에 동 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주1) 상기 투자비율은 투자자산별 투자금액(파생상품의 경우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적용)이 투자신탁 자산총액(파생상품의 경우 상품별로 달리 적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합니다.

주2)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3) 증권의 대여;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기타 운용방법(증권의 대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ETF 매매 편의성 증대: ETF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들에게 보유증권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대차거래에 참여한 시장조성자들은 ETF 호가 수량 확대, 호가 스프레드 축소 등을 통해 ETF 매매가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공급하고,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ETF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4) 증권의 차입;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릅니다.

구분		투자제한 사항	적용 예외
①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동일종목 투자제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최초 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③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구분		투자제한 사항	적용 예외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최초 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④	동일법인 지분증권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⑤	파생상품 매매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 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⑥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⑦	추적대상 지수관련	기초지수 구성 종목수의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행위	지수산출기관의 지수 편입종목 교체일 및 교체일 직전 영업일
		법 시행령 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일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에 포함된 것으로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기초지수의 95% 이상을 구성하는 종목에 투자하지 않는 행위	
⑧	금전의 차입	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① 신탁계약서 제26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② 신탁계약서 제36조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구분		투자제한 사항	적용 예외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③ 그 밖에 투자신탁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으로 정하는 때 나. "가"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 "가"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⑨	금전의 대여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법 시행령 제8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 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은 할 수 있습니다.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 전략

① 기본 투자 전략

- 이 투자신탁은 **FnGuide 삼성전기고정 AI 핵심기판 지수 (Price Return)**를 기초지수로 하여 1 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② **기초지수 소개**

- 기초지수명: FnGuide 삼성전기고정 AI 핵심기판 지수 (Price Return)

구분	내용
지수개요	**FnGuide 삼성전기고정AI핵심기판 지수 (Price Return)**는 AI반도체 및 인프라의 고도화에 따른 차세대 패키징 기술 및 기판 산업의 성장에 주목하여, 이와 관련된 소재·부품·장비를 포함한 핵심 밸류체인 기업에 투자하는 테마형 지수입니다. AI핵심기판 산업의 핵심 기업인 삼성전기의 비중을 25%로 고정하고 기초유니버스 조건을 충족한 종목을 대상으로 LLM(Large Language Model,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 테마 Overview 텍스트와 공시·뉴스·리포트 기반 기업 Overview 텍스트를 활용하여 계산된 테마스코어를 통해 선별합니다. 이를 통해 삼성전기를 중심으로 AI핵심기판 및 관련 산업의 성장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구성한 지수입니다.
유니버스 선정기준	종목선정일 기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상장 보통주 중에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종목을 기초 유니버스로 합니다. **공통 기준**

	-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되었거나, 상장폐지가 확정된 종목 제외 - 선박투자회사, 인프라투자회사, 해외주, REITs, ETF, ETN 제외 - SPAC 종목 제외 - 유동비율 10% 미만 종목 제외 - 시가총액 2000억원 미만인 종목 제외 - 60영업일 평균 거래대금 10억 미만인 종목 제외 - 그밖에 구성종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종목 제외
편입대상종목 선정기준	**1. 테마 스코어 산출** 종목선정일을 기준으로 공시보고서, 뉴스 및 증권사 리포트 등 공개자료를 활용하여 기업별 Overview를 생성하고, 최근 테마 뉴스 트렌드를 반영하여 테마 Overview를 생성합니다. 텍스트 임베딩 모델을 활용하여 기업 Overview와 테마 Overview의 텍스트 정보를 컴퓨터가 분석할 수 있는 수치 형태(임베딩 벡터)로 변환 후 테마와 각 기업의 임베딩 벡터 간 코사인 유사도 값을 계산합니다. 이는 테마와 기업 간의 의미적 연관성을 측정하는 것이며, 테마 벡터와 가장 인접한 기업을 테마 관련 종목 후보로 식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2. 편입대상종목 선정** 삼성전기와 기초 유니버스를 통과한 종목 중 테마스코어 상위 9개를 최종 종목으로 총 10개 종목을 선정합니다.
구성종목 수	10개
최종구성 종목선정	- 삼성전기와 기초 유니버스를 통과한 종목 중 테마스코어 상위 9개를 최종 종목으로 총 10개 종목을 선정합니다.
비중결정 방식	**1. 편입비중 결정** - 삼성전기 종목은 25%로 고정 - 나머지 종목은 테마스코어에 따라 결정된 종목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정합니다. 삼성전기를 제외한 종목에서 한 종목의 비중이 20%가 넘는 경우 20%까지 제한 적용됩니다. **2. 수시변경 및 처리방식** 지수 내 개별 종목 비중이 5영업일 연속 종가 기준으로 비중이 3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종목의 비중을 25%로 조정하는 수시변경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수시변경 시 특정 종목의 지수 내 비중이 25%를 초과할 경우, 25% 초과분을 차순위 종목들에 순차적으로 배분하여 모든 종목의 비중이 25%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종목 교체 기준	- 매년 2, 5, 8, 11월 말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종목을 선정합니다. - 종목결정일: 개편 직전 월 마지막 영업일 - 종목결정일 시점: 종가 - 비중결정일: 선물옵션만기일(D) 기준 D+4일 - 비중결정일 시점: 종가 - 지수편입일: D+6일, D+7일(2영업일) - 지수편입일 시점: 시초가

	- 실제수행일: D+5일, D+6일(2영업일) [단, 시장상황 및 펀드상황을 고려한 운용역 매매결정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실제수행일 시점: 종가 [단, 지수 추종을 위해 종가 타겟 지향하나, 시장상황 및 펀드상황을 고려한 운용역 매매결정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매 개편 시 종목 선정일에 상기의 선정기준으로 선택된 종목은 지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재무 데이터 상에 미 반영된 회계 손실이나 운용상의 중대한 편출 사유가 있을 경우 및 영업손실 확대 등으로 해당 지수 관련 상품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지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편출 및 차 순위 종목의 편입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개별종목 편입한도 (CAP비율)	20% (삼성전기: 25% 고정)
산출기준일 및 가격	2021년 6월 21일(1,000 P)
공식 산출일	2026년 7월 24일(4,901.69pt)
산출기관	FnGuide

※ 기초지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수산출기관인 FnGuide 홈페이지(https://www.fnguide.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기의 기초지수는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 변경 등으로 인해 이 투자신탁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기초지수가 등장할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의 변경등록이 진행되며 이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변경 시, 변경된 기초지수와 변경사유 등을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③ 포트폴리오 구성방안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FnGuide 삼성전기고정 AI 핵심기판 지수 (Price Return)를 완전복제 하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 기초지수의 구성종목 중에서 부도 리스크, 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투자가능대상 종목을 선별하고, 당해 투자가능대상 종목 중에서 추적오차를 감안하여 최종 투자대상종목을 구성하는 부분복제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초지수의 구성종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기초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에 투자할 수도 있으며 추적오차를 줄이기 위해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의 투자, 투자증권의 대여 등을 신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④ 포트폴리오 조정

이 투자신탁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주식시장 환경변화 또는 투자대상 종목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신탁재산 내 투자종목을 교체하거나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기초지수 구성종목의 정기적 또는 수시 교체시
- 기초지수 구성종목의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시가비중 변동시
- 투자신탁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종목의 부도 발생시

- 투자신탁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종목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 발생시
- 기타 추적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시

- 포트폴리오 구성내역(납입자산구성내역, Portfolio Deposit File)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 제251조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 또는 해지를 위한 현금, 구성종목 증권 등의 내역을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nh-amundi.com) 등에 매일 공고합니다. 동 내역은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ome trading system, HTS]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초지수(FnGuide 삼성전기고정 AI 핵심기판 지수) 구성종목 현황

(26.09.15 기준)

종목	비중(%)
삼성전기	21.84%
이수페타시스	21.13%
심텍	15.66%
대덕전자	14.33%
LG 이노텍	13.31%
태성	4.26%
코리아써키트	3.62%
해성디에스	2.81%
티엘비	2.71%
와이엠티	0.33%

※ 상기 내용은 현재 작성기준일의 구성종목 현황이며, 향후 리밸런싱 및 시장 상황에 따라 구성종목 및 비중이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험 관리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기초지수 수익률과 괴리(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추적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자신탁 관련비용의 최소화, 추적오차를 감안한 편입 종목 수 조정 등의 다양한 보완방안을 실행할 예정이나,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추적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이 투자신탁과 관련한 다양한 보수 및 비용(투자신탁보수, 매매수수료, 지수사용료, 상장수수료 등)은 순자산가치를 감소시켜 추적오차를 발생하게 합니다.

② 신탁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서 발생하는 현금배당은 순자산가치를 증가시켜 추적오차를 발생하게 합니다.

③ 포트폴리오 조정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구성종목의 교체 또는 비율변경은 추적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④ 신탁재산 내 구성종목 중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유동성리스크 및 그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유동성공급자 제도를 갖추고 있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로서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①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투자신탁으로 펀드의 운용구조상 유동성공급자를 두고 있습니다. 유동성공급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가 거래되는 시간 동안 매수·매도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거래에 있어 유동성 위험은 낮은 편입니다.

② 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주식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로 시가총액과 거래량이 일정수준 이상인 종목만을 편입합니다. 또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가 추종하는 지수의 구성 원칙에 따라 정기적(혹은 비정기적)으로 편입종목을 교체하여 투자대상 편입자산의 유동성위험을 관리합니다.

③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환매 발생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자산구성내역, PDF)의 평가금액에 따라 현금으로 환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매에 따른 유동성 위험도 낮은 편입니다.

④ 비상조치계획 : 위기대응 업무 프로세스 지침 등에 의거, 사전에 수립된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체계적으로 위기 관리 조치를 시행합니다.

I. 위기예방	리스크 지표 별 정기 모니터링, 주기적 포트폴리오 분석 및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 등 시행
II. 위기인지	위기상황 발생 시 보고체계에 따라 즉시 보고
III. 위기대응	· 대표이사, 부사장 및 각 주요 부서장들로 구성된 위기대응위원회를 운영 · 위기대응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필요시 유동성 관련 비상 대책 시행 · 기타 각 부서별 업무분장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위기대응 조치 시행

※ 상기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서 FnGuide 삼성전기고정 AI 핵심기판 지수 (Price Return)를 기초지수로 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투자수익/손실)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지정참가회사,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다음 투자위험은 작성일 기준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지정참가회사 및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주식 등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및 거래상대방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주식 등 증권의 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하락, 채무불이행, 부도발생 등에 따른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상장지수펀드(ETF) 특성	상장지수펀드(ETF)는 기초지수의 수익률(또는 기초지수 수익률의 정배수)을 추적하도록 설계된 펀드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일반 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매매가 가능하며 특정지수를 추종하도록 운용되는 인덱스 펀드와 주식의 특징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펀드는 벤치마크 수익률을 초과하기 위한 적극적인 매매 등의 운용전략을 수행하는 반면 ETF 는 기초지수(또는 기초지수 수익률의 정배수)의 수익과 유사하도록 운용하며, 투자자는 증권시장에서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합니다.
상장폐지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서 법령 등에서 정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은 해지되고 잔여자산을 분배할 것이나, 잔여자산 분배 시까지의 기간 동안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수익증권의 현금화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추적오차발생 위험	이 투자신탁은 기초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실현함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투자신탁보수, 매매수수료 등 관련 비용의 지출 등 현실적 제한으로 인하여 기초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과 기초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할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자는 당해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수추종위험	이 투자신탁은 기초지수 수익률 추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기초지수 수익률 하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즉, 기초지수 수익률 하락시 수익률하락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포트폴리오 조정 등 별도의 노력을 수행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트폴리오 집중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기초지수인 FnGuide 삼성전기고정AI핵심기판 지수 (Price Return)와 관련된 종목의 한정된 투자대상에 집중하여 투자함으로써 보다 더 분산투자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높은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시장상황 또는 환경변화에 의해 크게 하락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분산투자된 투자신탁에 비해 투자원금액의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정산업 집중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특정 산업에 속하는 증권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산업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지수산출방식의 대폭 변경 또는 중단 위험	이 투자신탁의 기초지수를 관리하는 지수관리회사의 사정으로 그 지수의 산출방식이 대폭 변경되어 집합투자업자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투자전략으로 더 이상 그 지수를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지수관리회사의 사정 또는 기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지수의 발표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운용이 중단되고, 상장 폐지 및 이 투자신탁의 전부해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수익자는 기대하지 아니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거래에 따른 순자산가치와의 괴리위험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며 시장가격으로 유통시장을 통해 매매됩니다. 이 투자신탁의 시장 가격은 순자산가치(NAV) 및 유통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시장가격은 이 투자신탁에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 NAV 보다 높게 또는 낮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ETF 거래가격과 순자산가치(NAV)와의 괴리 위험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ETF 의 경우 거래가격은 당해 ETF 의 순자산가치를 의미하는 1 좌당 예상기준가격(i-NAV)과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당해 ETF 의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 간의 차이가 확대되는 경우, 유동성 공급자가 헤지목적으로 거래하는 대상의 가격 움직임에 의해 유동성 공급자가 제시하는 매수 매도 호가가 1 좌당 기준가격(NAV)과 차이를 보일 경우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또한, 주식시장의 마감 전 동시호가에서 유동성공급자의 호가 공백이 발생하거나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당해 ETF 에 편입된 자산의 평가 기준시점과 ETF 의 종가시점이 상이한 경우 등의 이유로 ETF 의 종가와 순자산가치와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i-NAV(Indicative Net Asset Value, 추정순자산가치)는 ETF 를 구성하는 기초종목들의 최근 가격에 기반한 예상가격으로, 한국거래소 홈페이지(http://marketdata.krx.co.kr/mdi#document=080111), 거래 증권사 HTS 또는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도자산 등의 평가위험	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 중 해당 자산 발행사의 부도, 화의신청,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절차 진행등으로 인해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하여 부도채권 또는 부실자산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산상각을 하게 되며, 이는 해당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투자신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산상각에 따른 평가액은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 발행사의 회생에 따라 해당 자산의 가치가 다시 상승할 수 있으며 또는 발행사의 청산에 따라 해당 자산의 가치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수익자의 투자자금 회수 곤란 위험	개인수익자는 보유 수익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만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즉, 개인투자자는 보유 수익증권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환매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거래가 부족하여 개인수익자가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수량을 매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개인수익자가 보유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현금화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대하지 아니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법인수익자의 경우 보유 수익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거나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설정단위 또는 그 정배수로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환매 신청할 경우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서 환매가 가능합니다.
총비용	ETF 는 일반적인 펀드와 같이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 일반

	사무관리회사 등 펀드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가 발생하며 이는 펀드에서 부담합니다. 또한 상장수수료와 연 부과금 및 지수사용료 등 기타 운용관련 비용이 발생하며 거래 시 부과되는 매매수수료 등은 투자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 기타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라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 가치 변동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제 2 부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신탁 소규모 위험	투자신탁의 설정금액이 소액이거나, 환매 등에 의해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분산투자 등 원활한 펀드 운용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해지 위험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최초로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사전 동의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 또는 해산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오류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운용실무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나, 예금이나 보험과는 달리 집합투자기구 운용구조는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이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용실무상 오류는 기준가격 오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집합투자업자 등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권대차 거래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의 이익 증대 등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으로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거래가 가능합니다.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투자신탁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자산의 예 : 해외투자시 환차손익, 채권투자시 이자수익 등 *비과세대상자산의 예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 상기의 투자위험은 작성시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에 의해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추후 이 투자신탁의 설정기간이 3년 경과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일간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VaR)'을 기준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재산정하여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며,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위험등급 변경 내역>

변경일	변경 위험등급	변경사유
-	-	-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분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등급	등급 분류기준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2.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3.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4.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 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음

주1) NH-Amundi자산운용은 운용중인 펀드의 위험수준을 매우 높은 위험 수준(1등급)부터 매우 낮은 위험 수준(6등급)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의 분류기준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위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가. 매입

(1) 수익증권의 매입방법

1) 증권 시장에서의 수익증권 매입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한국거래소에서 1좌 단위로 장중 매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작은 규모의 자금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시기를 원하는 투자자는 한국거래소를 통한 장내매매를 통해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2) 지정참가회사 또는 판매회사를 통한 수익증권 매입(투자신탁의 설정 청구)

- 지정참가회사를 통한 설정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법인투자자에 한하며, 법인투자자는 설정단위(CU: Creation Unit) 또는 그 정배수에 해당하는 증권 및 자금을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이 투자신탁으로 납입하고, 집합투자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기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개인도 금전에 의한 납입을 통해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설정의 청구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해 설정단위인 50,000좌 단위로 받습니다.
- 설정에 따른 수익증권은 그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에 받게 됩니다.

(2) 설정단위(Creation Unit)

설정단위란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ETF)을 설정신청하거나 수익자가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 신청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50,000좌**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50,000좌 또는 그 정배수(100,000좌, 150,000좌 등)로만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규모의 자금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투자자의 경우 증권시장에서 수익증권을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설정단위 평가가액의 변동으로 투자신탁의 원활한 설정·해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설정단위의 수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월전까지 한국거래소에 설정단위 수량의 변경에 관하여 공시하고 공고할 것입니다.

(3) 정산금액 등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는 투자자와 기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정산금액산출: 설정청구일에 납입한 납부금등의 설정청구일 종가 기준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와의 차액
- 정산일: 투자자는 당해 정산금액을 **설정청구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
- 정산금액 발생 이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청구일에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은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설정청구일에 발생할 수도 있는 배당금 등의 권리 또는 신탁재산의 변경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당해 정산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4) 투자신탁 설정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또는 추가설정을 요청하고, 투자자로부터 직접 납입받거나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납입받은 납부금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여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신탁업자에 납입함으로써 설정합니다.

※ 투자신탁 설정청구의 효력 등
- 투자신탁의 설정청구는 매 영업일 오후 3시30분까지로 합니다. 투자자가 이 시한을 경과하여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는 경우, 이 설정청구는 그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설정은 투자자의 설정청구로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동 설정청구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승인을 하여야 설정청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설정청구의 취소는 설정청구일 오후 3시30분까지 가능합니다. 이 시한을 경과하여 설정청구를 취소하는 경우 동 취소신청은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상기 1)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부금등을 납입하는 경우 당해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날(이하 "설정요청일"이라 한다)에 집합투자업자가 한국거래소에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내역의 납부금등을 **설정요청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부금 등의 내역이 납부자산구성내역과 100분의 95이상(자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것을 말한다) 동일한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상기 2)의 단서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와 지정참가회사가 합의하는 경우 투자자는 납입금등과 납부자산구성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미구성자산"이라 한다)에 갈음하여 금전을 납입(이하 "대납현금"이라 한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지정참가회사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참가회사와 당해 대납현금을 매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대납현금의 산출: 설정요청일의 미구성자산의 종가에 의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대납현금으로 증권시장에서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경우 발행하는 비용 합계액에 100분의 115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 대납현금의 정산: 대납현금의 비율이 ①에서 규정한 비율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정참가회사로부터 금전을 추가로 징수하여 ①에서 규정한 비율에 충족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대납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익의 반환: 당해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기간 중 대납현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의 수익이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이자 등의 수익을 지정참가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4) 상기 1) 및 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거나 직접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5) 투자자가 상기 2)의 본문에 의한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하지 않은 내역의 납부금등으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입금등을 납부자산구성내역과 일치하도록 증권을 매매하는 등으로 변경(이하 "납부금등의 매매"라 함)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지정참가회사가 5)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금등의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명의의 위탁매매 계좌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참가회사 명의의 계좌(이하 "공동계좌"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납부금등을 매매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동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7) 상기 5) 및 6)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가 납부금등의 매매를 하는 경우 투자자는 납부금등의

매매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증권의 매매 시기, 가격, 수량 등을 말함)에 대한 지정참가회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납부금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8) 상기 5) 내지 7)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가 납부금등의 매매 과정에서 지정참가회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납부자산구성내역에 포함된 증권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사유로 인해 납입금등의 매매가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당해 설정을 집합투자업자에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9) 지정참가회사가 8)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가 투자 신탁의 설정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을 현상 그대로 또는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하여 납입한 자산 그대로를 투자자에게 인도합니다. 다만, 다음에서 정하는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위 자산을 금전화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위 자산을 전부 금전화한 후 지체없이 당해 투자자에게 환급하고, 위 자산의 금전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투자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① 투자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경우

② 지정참가회사가 6)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좌로 투자자의 납입금등을 매매한 경우

10) 상기 5) 내지 7)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발표한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와 지정참가회사는 다음 각호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①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보다 클 경우: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금전 또는 증권을 투자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증권을 매각하여 정산

②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보다 작을 경우: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부족분에 상당하는 금전 또는 증권을 투자자에게 환급

11) 상기 1) 내지 10)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한 납부금등의 설정요청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신탁재산의 운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의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액을 **설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3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12) 상기 1) 내지 1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서 정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요청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후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이러한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②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신탁재산 보유 주식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주식 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주식의 교체를 위하여 신탁업자에 운용지시서를 발송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③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주식이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 종목으로 상장되어 지수에 신규 채용되는 경우: 당해 주식의 거래 정지일로부터 3영업일전부터 신규 종목의 지수 채용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④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3영업일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접수 중지일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⑤ ① 내지 ④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본항 각 호에서 규정한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⑥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3) 상기 12)의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공시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투자신탁의 설정요청 접수를 중지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설정요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당해 설정요청을 취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의 최초 영업일에 당해 설정요청을 접수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그 최초 영업일에 발표하는 납입자산구성내역과 기존에 설정요청을 접수한 납부금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이를 보정하여야 합니다.

(5) 투자신탁의 설정 절차

구 분	T-1	T	T+1	T+2
투자자		지정참가회사에 설정청구		- 설정자금 납입 - 정산금액 존재 시, 정산 및 수익증권 수령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에 설정청구	인수도명세 확정 및 투자자 통보	신탁업자로 납부금등 이체(전자등록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	납부자산구성내역 통보(거래소 등)	설정내역 확인 및 승인		수익증권 발행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전자등록)
전자등록기관		설정내역 취합 및 통보		확정된 설정내역 취합 및 통보
신탁업자				납부금등의 납부 확인

나. 환매

(1) 환매방법

1) 증권시장에서의 수익증권 매도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1좌 단위로 장중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증권 매도에 따른 결제 절차는 일반적인 주식매도의 결제 절차와 동일합니다. (매도일로부터 3영업일에 매도대금 결제)

2) 지정참가회사를 통한 수익증권 매도(투자신탁의 환매청구)

- 법인수익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설정단위인 50,000좌** 또는 그 정배수로 보유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가능합니다. (환매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에 환매) 개인수익자의 경우는 투자신탁의 환매청구에 의한 수익증권 환매는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투자신탁 환매에 관한 사항

1) 수익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업무정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이하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익증권 환매청구의 효력 등 -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는 매 영업일 오후 3시 30분까지로 합니다. 수익자가 이 시한을 경과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그 환매청구는 그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합니다. - 환매청구의 취소는 환매청구일 오후 3시 30분까지로 가능합니다. 이 시한을 경과하여 환매청구를 취소하는 경우 동 취소신청은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상기 1)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는 상기 1)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상기 1) 및 2)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 받은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5) 상기 2) 내지 4)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하는 경우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때에는 신탁업자에 이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상기 2) 내지 5)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합니다.

7) 상기 2) 내지 6)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한 날(이하 "환매청구일"이라 한다)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에 따라 **환매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서 환매합니다. 다만, 환매청구일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환매청구일 종가기준 평가가액과 **환매청구일**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에 산출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차액부분을 정산하여 환매하여야 합니다.

8) 상기 7)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재산에 환매자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전이 부족할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금전에 갈음하여 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증권의 평가는 **환매청구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9) 상기 7)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 해지에 의한 방법으로 환매에 응하여야 합니다.

10) 7) 내지 9)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이고 환매자산으로 지급하는 자산 중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취득이 제한되고 외국인의 취득한도가 초과되는 주식이 있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화하여 외국인의 취득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의 현금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1. 지정참가회사는 수익자가 환매자산을 지급받는 날의 증권시장 종료로부터 지정참가회사와 수익자가 합의한 시점까지 당해 주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2. 수익자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자진 매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화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수익자와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주식을 지정참가회사가 임의 처분할 수 있다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당해 주식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11)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이하 이 조에서 "환매불가사유"라 한다), 해산 등 외의 (시장폐쇄, 대량환매) 환매불가사유의 경우 법 제237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으며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1.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는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12) 1) 내지 10)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11)의 규정에 의한 환매불가사유로 인하여 7)의 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7)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 제237조에 따라 환매를 연기하고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3) 11)의 환매불가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자산은 당해 환매불가사유가 해소되어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환매에 응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14) 1) 내지 1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후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2.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3영업일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본 항 각 호에서 규정한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5) 14)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청구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공시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접수를 중지할 경우, 수익자는 당해 환매청구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환매청구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당해 환매청구접수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당해 환매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봅니다.

(3) 수익증권 환매 절차

구 분	T-1	T	T+1	T+2
투자자		지정참가회사에 환매청구		수익증권 제출 및 환매자산수령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에 환매청구	인수도명세확정 및 투자자 통보	- 신탁업자로부터 환매자산 인수 - 수익자계좌에서 수익증권 인출 및 자산입고
집합투자업자	납부자산구성내역 통보(거래소 등)	환매내역 확인 및 승인		투자신탁 일부해지(전자등록기관을 통한 말소의 전자등록)
전자등록기관		환매내역 취합 및 통보		실행된 환매내역 취합 및 통보
신탁업자				지정참가회사로 자산이체 및 이체내역 확인

(4) 설정·환매시 자산의 이체 방법

-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와 신탁업자가 설정 또는 환매에 따라 자산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에 의한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자산을 이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물 입·출고에 의한 설정·해지는 불가합니다.
- 지정참가회사의 설정 또는 환매의 요구, 집합투자업자의 설정 또는 환매에 대한 승인, 기타 설정 또는 환매 관련 사항의 통지, 확인 등의 업무는 전자등록기관이 운영하는 전자등록기관시스템에 의하여야 하며, 동 시스템에 투자신탁 설정 또는 환매의 요구, 승인, 통지 및 확인 등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당해 요구, 승인, 통지, 확인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5)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상기의 환매 관련 절차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수익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일부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수익자총회 합병승인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투자신탁분배금지급기간 종료에 따른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6) 환매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구분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 허용
환매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	-	○

※ 이 투자신탁은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 환매수수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환

해당사항 없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다만,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공시방법 및 장소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지정참가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한국거래소(www.krx.co.kr)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 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공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③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의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합니다.

구 분	내 용
상장증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해외증권시장을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장내파생상품 및 해외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채무증권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2.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일 현재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관련법령에 따라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아래의 자가 제공한 가격 (1) 채권평가회사 (2)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3) 신용평가업자 (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5)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6) (1)~(5)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 (7) (1)~(6)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지정참가회사 또는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합성총보수·비용	동종유형총보수	증권거래비용
투자신탁	0.40	0.01	0.02	0.02	0.45	-	0.45	-	-	-
지급시기	매3개월 후급(보수계산기간 종료일 익영업일로부터 10영업일이내 지급). 단, 최초보수 계산기간은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1, 4, 7, 10월의 마지막일까지				-	사유발생시	-	-	-	사유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며, 예탁 및 결제비용, 회계감사비용, 채권·펀드평가보수, 지수사용료, 보관대리인 보수, 법률자문비용, 부동산감정평가보수 등을 포함합니다. 상기 기타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한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2)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구성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 내역 (단위: 천원)
증권거래비용	주식·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기타 증권 등 자산매매수수료, Repo·콜·대차 또는 대주·현금 등 중개수수료 등 다만,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금융비용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비용 등	-

- 상기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을 연환산한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금융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금융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계산이 가능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투자신탁이거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비용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작성기준일의 전월말 기준)

※ 보수율 책정의 합리성과 운용 품질 영향에 관한 사항

① 내부 협의체 심의를 통한 보수 선정, 관련 절차

이 투자신탁의 보수율 책정에 관한 사항은 집합투자업자의 「보수 및 수수료의 부과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상품의 개발단계에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상품특성, 설정규모, 필요한 업무의 수행수준(인적·물적 자원 및 비용 등을 포함)등과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보수 및 수수료에

대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의 내부 상품협의회 승인으로 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총보수를 정했습니다.

② 타 부문(지정참가회사,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의 비용 전가 여부

펀드 운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이 타 부문에 전가되지 않도록, 각 관계회사와의 충분한 협의 단계를 거쳐 적정성 및 공정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였으며 상호간 합의하였습니다. 모든 계약은 공정한 기준으로 투명하고 자율적으로 체결되었으며, 협력사의 서비스 품질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이외 어떠한 부문으로도 펀드 운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은 전가되지 않습니다.

③ 운용품질 유지 방안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운용 품질을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내부 자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 등을 담당하는 인력 배분을 최적화하고, 축적된 운용 경험과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인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중인 운용지원시스템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용지원시스템 보유 및 활용 현황

구분	시스템명	제공/개발업체	최초 도입일	최근 업그레이드일
주문시스템	ai Trader	신한펀드파트너스	2003.01	수시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	운용지원시스템(舊 BIGS)	신한펀드파트너스	2003.01	수시
	PMS	이음솔루션	2014.06	수시
	K-Stock(K-Solution내)	한국펀드평가	2020.01	수시
	PMO(K-Solution내)	한국펀드평가	2003.01	수시
	PORT Enterprise	Bloomberg	2014.10	수시
컴플라이언스	ai Trader / ai Monitor	신한펀드파트너스	2003.01	수시
펀드 회계시스템	AITAS	신한펀드파트너스	2003.01	수시
리서치	FN GUIDE	FN GUIDE	2003.01	수시

- 집합투자업자는 펀드의 품질을 단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경쟁력 유지 확보 차원에서 전략적인 중요과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당사는 ETF 펀드 수 및 순자산 확대에 대비하여 추가적인 운용인력 확충을 계획하고 있으며, 운용에 필요한 자원과 인프라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투자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 추후 주식 거래시간 연장이 시행되더라도 기술 인프라 강화, 운용 인력 효율화,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안정적인 운용 품질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 「보수 및 수수료의 부과 지침」은 집합투자업자 NH-Amundi자산운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h-amundi.com/customer/disclosure/fund)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

(단위 : 천원)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46	94	145	253	568

주1) 수익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기타비용 포함)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이익분배금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종료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제4호의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3.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합니다.

(2) 투자신탁 분배금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여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시 분배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한다.

- 지급기준일: 매 1월, 4월, 7월, 10월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 (다만, 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로 합니다)
- 지급시기: 지급기준일 익영업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 대상 수익자: 지급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중인 수익자
- 분배금: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②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지체없이 당해 투자신탁분배금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합니다.

③ 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한 후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 대한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① 내지 ③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인도받은 투자신탁분배금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상환금등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잔존자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해지기준일의 투자신탁 전체 수익증권 중 각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비율에 따라 각 수익자에게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합니다)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상환금등을 해지기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각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잔존자산의 매각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집합투자업자가 상환금등의 지급을 위하여 신탁업자에 상환금등의 지급을 지시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지체없이 당해 상환금등을 전자등록기관(집합투자업자가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할 것을 지시한 경우에 한합니다)을 경유하여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로 인도합니다.

③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의하여 상환금 등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한 후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 대한 상환금 등의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① 내지 ③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아닌 법에 의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관리하는 계좌에 수익증권을 보유한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수익자가 상환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4) 이익분배금,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

- 이익분배금,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신탁계약서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합니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최초설정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이후에는 매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 시에는 투자신탁 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나. 과세

- 다음은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및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가 부담하게 될 과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등에 따라 아래의 과세관련 내용은 변경가능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과세 방법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하지 아니하므로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이 투자신탁과 관련한 세제부분은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의 형식으로 납부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의 형식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의 보유기간과세 적용 시행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2010년 7월 1일(이하, '시행일')부터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과세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주식형 ETF(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ETF)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아래의 기준은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기재된 것이며 투자자별 보다 자세한ETF의 과세표준 및 매매내역관리, 원천징수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거래 증권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AP)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현금분배시 : ETF 결산시점에 분배금액에 대하여 보유기간 동안의 과표증분을 한도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분배금액은 분배부 과표기준가격에서 분배락 과표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과 현금분배금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 과표증분은 분배 과표기준가격에서 매수 과표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② 매도시 : ETF 매도, 환매, 해지 및 해산 시점(이하, '매도시점')에는 보유기간동안의 과표증분과 매매차익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과세표준액이 계산되며 과세유보금액이 있는 경우 과표증분과 매매차익 계산시 각각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 과표증분은 매도시점의 과표기준가격에서 매수시점의 과표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과세유보금액은 분배금액에서 결산시점의 과표증분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계산됩니다.
- 증권시장을 통하여 하나의 계좌내에서 동일한 ETF를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수량 가중 평균 가격을 산출하여 매수 과표기준가격으로 산정합니다.

③ 매수 과표기준가격 적용 기준 : 보유기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시행일 전에 매수하여 시행일 이후 매도하는 경우 시행일의 과표기준가를 매수 과표기준가로 적용합니다. 다만, 매수시 과표기준가가 시행일의 과표기준가보다 높은 경우 매수시 과표기준가를 적용합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기준가격: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과표기준가격: 펀드의 투자원금에 과세대상자산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참조)에서 발생한 운용성과만을 더하거나 차감하여 계산된 것으로서, 환매 또는 이익분배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비과세대상자산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참조)에서 발생한 손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손익이 (-)손실인 경우에도 투자자는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1) 요약재무정보 해당사항 없음

2) 재무상태표 해당사항 없음

3) 손익계산서 해당사항 없음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1) 연평균 수익률(세전기준) 해당사항 없음

2)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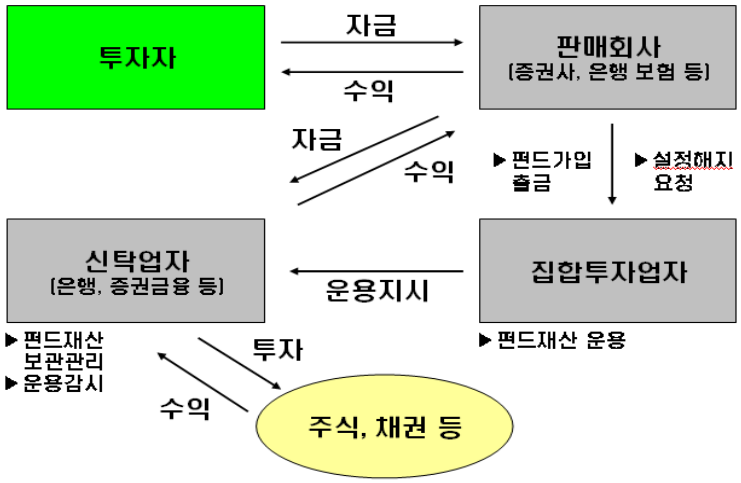
3)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4) 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자산 구성 현황

① 국내 채권종류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② 국내 채권신용평가등급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③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국가별/ 통화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④ 국내 주식 업종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⑤ 국내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해당사항 없음
⑥ 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해당사항 없음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와 투자자 및 집합투자기구간의 관계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NH-Amundi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2 (여의도동, 농협재단빌딩 10층) 연락처 : 02-368-3600 (www.nh-amundi.com)	
회사연혁	2002.04	농협과 CAAM간 자산운용회사 설립에 관한 MOU체결
	2003.01	NH농협금융지주와 Amundi의 합작법인 설립
		※ Amundi : 프랑스 크레디아그리꼴(CA) 금융그룹의 자산운용 자회사, 2010. 01 CAAM에서 Amundi로 사명 변경
	2003.03	투자신탁운용업 본허가 취득(금융감독위원회)
	2003.04	영업개시 및 첫 펀드 설정
	2006.09	국내 대형 연기금 SRI펀드 운용사 선정
	2007.08	NH-CA자산운용㈜로 사명 변경
	2009.01	수탁고 10조원 돌파
	2009.06	국내최초 공모 레버리지 펀드 출시
	2010.01	'Amundi자산운용'으로 재출범 (모회사인 Credit Agricole과 Societe Generale의 자본출자)
	2010.01	"1.5배 레버리지 인덱스 펀드" 금융감독원 선정 2009년 '최우수 금융신상품상' 수상
	2012.03	'NH농협금융지주'로 새롭게 출범 (모회사인 농협중앙회가 7개의 금융자회사로 구성)
	2015.08	단독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2015.10	대체투자 사업 진출
	2016.05	NH-CA자산운용㈜에서 NH-Amundi자산운용㈜로 사명 변경
	2017.07	모회사인 Amundi의 Pioneer(파이오니어) 인수 완료 : 자산규모 1,600조원의 글로벌 Top8 운용사로 발돋움
	2018.02	공무원연금공단 '사회책임투자형' 우수운용사 선정
	2018.03	HANARO ETF 출시

	2018.11	사모 헤지펀드 출시
	2018.12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2019.02	KG제로인 2019 대한민국펀드어워즈 '대상' 수상
	2019.02	매일경제 2019 매경증권대상 '펀드부문 대상' 수상
	2022.01	수탁고 50조원 돌파
자본금	400억	
주요주주	농협 60%, Amundi 40%	

나. 주요 업무

(1) 집합투자업자 업무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의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며, 위탁에 따른 수수료는 동 투자신탁에서 부담합니다.

(2) 집합투자업자의 선관의무 등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계산으로 행한 법률행위로부터 발행한 제비용 및 보수를 신탁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의 채무를 수익자의 명의로 부담하게 하거나 집합 투자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채권은 그 집합투자업자의 당해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3) 집합투자업자의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신탁계약서·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법령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이 법령 및 신탁계약서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이를 판매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4) 업무의 위탁

-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 등과 관련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게 되며, 그 보수는 투자신탁재산이 부담하게 됩니다. 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한국펀드파트너스㈜에 위탁하였습니다. 업무의 위탁에 대한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 있습니다.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항 목	'25. 12말	'24. 12말	항 목	'25. 12말	'24. 12말
현금 및 예치금	87,648	75,038	영업수익	112,716	92,492
유가증권	61,516	60,411	영업비용	61,135	55,689
유형자산	1,124	1,226			
기타자산	38,570	26,297	영업이익	51,581	36,803
자산총계	188,858	162,972	영업외수익	735	712
예수부채	-	-			
기타부채	33,734	22,842	영업외비용	312	292
부채총계	33,734	22,842	법인세	12,780	7,225
자본금	40,000	40,000			
이익잉여금	115,124	100,130	당기순이익	39,224	29,998
자본총계	155,124	140,130			

라. 운용자산규모

[2026.09.15 현재 / 단위 :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및부동산파생	특별자산및특별자산파생	혼합자산및혼합자산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수탁고	39,162	106,990	5,460	0	37,884	47,720	0	7,811	65,839	5,533	179,535	495,934

2. 운용관련업무 수탁업자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HSBC 서울지점)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37 (☎ 02-2004-0128)
홈페이지	www.hsbc.co.kr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의무 및 책임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약서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위의 요구를 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법 제8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신탁업자가 법령, 신탁계약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펀드파트너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44층 (☎ 02- 769-7855)
홈페이지	www.korfp.com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기준가격의 계산업무 및 공고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환매요청 접수의 제한에 대한 공고 업무
- 납부자산구성내역 등의 공고 업무
-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업무
-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른 투자신탁 운영과 관련되는 공시 및 공고업무
- 상기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등

(2) 의무 및 책임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는 법과 시행령 그리고 그 하위규정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수탁받은 주요 업무내용"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신탁계약서 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KIS자산평가	한국자산평가	NICE피앤아이	에프엔자산평가	이지자산평가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75 현대빌딩 11층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2층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연락처	02-3215-1400	02-2251-1300	02-398-3900	02-721-5300	02-785-1410
설립일	2000. 6. 20.	2000. 5. 29	2000. 6. 16	2011. 6. 9	2020.6.19
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bond.co.kr	www.koreaap.com	www.nicepni.com	www.fnpricing.com	www.egap.co.kr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2) 의무 및 책임

- 채권평가회사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 ·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
 - ·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사항
 - ·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위하여 얻은 정보를 다른 업무를 하는 데에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관련법령 또는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전자등록기관은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는 때에는 가부 등의 표시로 그 수익자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보내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합니다)한 것으로 봅니다.
 -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제6항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221조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 총회일부터 6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도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및 간주의결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준용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법령 및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투자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 그 밖의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신탁계약서 제42조제2항 및 제3항 이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신탁계약서 제42조제1항에 따라 변경될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손실보상(혹은 손해배상)을 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손실보상(혹은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합니다.

1. 손실보상(혹은 손해배상) 액: 신탁계약에서 정한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집합투자업자 혹은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전일을 기준일로 역산하여 365일 동안 매일을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365일로 나눈 금액)에 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신탁계약기간 동안 보수율이 변경된 경우 수익자총회 개최 직전일의 보수율을 적용합니다.

2. 보상기간: 365일 (다만,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변경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
3. 지급시기: 변경일 전일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5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법 시행령 제222조제2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 분배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신탁재산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가 관련 법령·신탁계약서·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아래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신고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을 말합니다)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 법 시행령 제135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35조제2항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그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제3조제1항제15호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서 등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복사하거나, NH-Amundi자산운용의 인터넷홈페이지(www.nh-amundi.com)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1) 의무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2)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 이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의 합병,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의 전환, 투자신탁의 존속 등 이 투자신탁의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 영업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까지 이를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 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② 결산서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까지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제1항의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령 제26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합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서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법 제247조제5항 각 호의 사항
 - 법 시행령 제27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신탁업자가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서에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서를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신탁계약서를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주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주2) 수익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신탁계약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관련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공시합니다.

(2) 수시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합니다)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투자설명서의 변경(다만, 관련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서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 될 수 있다는 사실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수시공시는 다음의 방법으로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법 제9조제15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법 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주1) 상기의 거래내역은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최근 1년(본 신고서(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부터)간의 거래내역입니다.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분	내용
투자증권거래	1) 선정시 고려사항 -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기구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2) 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 특정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 -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매매대가 이익이 제공될 수 없는 방법] ① 회사 경영관련 비용 ②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③ 마케팅 비용 ④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 등) ⑤ 운용전문인력은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증권 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됨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주1) 매매대가 이익: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2) 각 항목별 평가항목 등은 관련 법규 또는 당사 내부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투자업규정 제 7-1조의2제2항4호에 따라 고유재산 투자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 사항 해당사항 없음

용 어 풀 이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기준가 산정 통화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증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채권, 주식,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증권, 특별자산의 투자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재산을 특정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단위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를 클래스별로 달리 적용하는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이자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배당금 및 이자를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한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및 추가 불입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 가입 이후 일정기간을 유지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용 어	내 용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Benchmark, BM)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비중 등 투자전략을 고려하여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액티브(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변경 및 투자자에게 공시될 예정입니다.
참조지수	비교지수와는 다르게 해당 투자신탁의 단순 성과비교시 참조를 위한 것으로서, 해당 투자신탁이 반드시 참조지수와 유사한 투자대상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수익자에게 참조지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과를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지수는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